

제410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1월21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5)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7)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4)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2)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6)
8.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9)
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6)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2)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3)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8)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7)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4)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345)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080)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79)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1)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9)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6)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068)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7)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6)
2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52)
2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85)
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3)
2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0)
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6)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
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
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8)
3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0)

3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1)
3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6)
3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7)
3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1)
3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8)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2)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8)
40.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80)
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36)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35)
43.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41)

상정된 안건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4) 3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2) 3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3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2) 11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3) 12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8) 12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7) 12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4) 12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345) 12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080) 18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79) 18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1) ... 18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9) ... 18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6) ... 18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068) 26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7) 26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6) 26
2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52) 34
2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85) 34
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3) 34
2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0) 34
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6) 34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 44
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 45
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8) 47
3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0) 47
3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1) 47
3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6) 47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기획

○소위원장 유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는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우리가 논의하다가 해당 부처의 얘기를 좀 더 들어 보자 이렇게 한 부분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4)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2)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10시15분)

○소위원장 유동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송주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2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변재일 의원님 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사광가속기 운영·연구기관 등에게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인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대형가속기 전반에 적용되도록 확대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기재부는 특례 신설에는 동의하나 특례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중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8쪽 참고자료에 보시면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2조(정의) 4호의 가와 나까지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기재부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기부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논의하기로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 설명하신 대로 특례 대상 부분은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운영기관으로 한정을 하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존속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 8년 정도, 원칙에 따라서 2031년 말까지 이렇게……

○소위원장 유동수 과기부에서 지금 설명하신 분이 와 계시지 않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최문기 원자력연구개발과장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을 가, 나로 축소하고자 하는 기재부 안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예,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기관하고 그다음에 구축기관으로 한정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부처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가속기 대비해 가지고 다 적용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당초에 방사광가속기 특별법 만드실 때 2조 4호의 다목까지, 연구기관까지 넣은 이유는 뭐고, 이걸 빼는데 왜 빼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 특별법에 있는 전체 연구개발기관을 미래의 수요를 상정해 가지고 넣었는데 현재 대부분 다 연구개발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항 자체가 없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이란 뭘 얘기를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일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연구기관이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출연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하고 과기출연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그리고 상법에 따른

회사가 있습니다. 범위가 좀 넓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래서 제한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연구개발기관이라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지까지 감안을 해서 범은 좀 폭넓게 정해 놓은 것 같고요.

기재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유 재산에 대해서 사용에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그걸 미래를 상정해서까지 넣는 건 아닌 것 같고, 운영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이라는 조항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활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제가 얘기를 들어 보려고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방사광가속기 이게 몇 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구축기관과 운영기관으로만 한정하는 게 연구개발하는 데 접근을 가로막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이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가 설치되면 특정 바운더리 공간 내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 공간에 어떤 시설을 넣고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구축기관, 운영기관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설치된 기계를 운영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관련된, 국유재산에 관련된 사용은 운영기관과 구축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이 결정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홍성국 위원님.

○홍성국 위원 방사광가속기가 많은 R&D 연구기관 그리고 충청도에 있는 것도 오창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쓰자고 하는 건데 이걸 정부기관 중심으로 큰 기관들만 쓴다고 하면……

아까 과기부에서 말씀하실 때 민간 부분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던데요. 그러면 민간은 어떻게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민간이 활용할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성국 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민간이 활용할 때는 일단은 가속기가 만들어지고 나면 연간으로 일단 타임 슬롯을 줍니다. 그러면 아카데미에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비싼 이용료 그다음에 아카데미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좀싼 이용료로 해 가지고 타임 슬롯을 잡고요. 그래서 기업체도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홍성국 위원 아니, 여기에 민간 부분들은 안 쓰여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그런데 그것은 이용하는 주체가 아니고 대규모 국고를 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법에서 이야기하는.

○홍성국 위원 운영하는 주체다, 이용자가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위원님, 이걸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대출 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이용 수준이 아니라 운영기관에는 제한이 없는데 민간 회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내용대로 하면. 민간 회사들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돼 가지고 이 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이 법의 적용 규모를 처음에 저희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박대출 위원 아니, 운영기관 한번 읽어 보세요, 뒷부분. 앞엿것 다 읽지 말고.

○서영교 위원 그런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까.

○박대출 위원 아니, 그것 다 포함되는 걸로 된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나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이 특례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법에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적용 대상은 민간 구축시설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투자되는 기관만 대상이 됩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민간 구축시설 말고 아까 민간 뭐 표현 있는데 그 내용 한번 읽어 보세요. 민간이 하는 무슨 법인이라든지……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 그건 다목 연구개발기관을 얘기하는 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상법에 따른 회사 말씀이
십니까?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요, 다목 연구개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정부출연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박대출 위원 아니, 상법 그 대목 읽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3호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
한다.

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
교(대학), 다가 정출연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
관, 라가 과기출연법에 따른 과기 출연연구기관,
마가 지방자치출연 연구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출연 연구원, 바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
른 특정연구기관, 사가 상법에 따른 회사.

○박대출 위원 사에 들어 있잖아. 상법에 따른
회사가 민간이지. 사에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러면 그 운영기관에는 제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갑자기 무슨 ET가 와서 하지 않
는 한 누구든지 만들어 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광범위하게 길을 열어 놓는 것 자
체가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국유재산
을 제한된 범위 내에 써야 될 때 또는 다른 과급
효과가 없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를 내가
좀 묻고 싶었어요.

사실상 저 대목을 얘기하자면 누구든지 가속기
관련해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민·
관 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설치하
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처음
에 말한 것은……

○박대출 위원 아니, 설명은 특정 기관이나 이
것을 운영할 능력이 있거나 이런 일부에 극히 제
한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가·나·다·라·
마·바·사까지 들어가 버리면 다 열린 거라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데 실제로 국
비를 넣어 가지고 하는 데 이 법이 적용되는 거
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기
관이라는 게 일부 대학이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
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이 법이 변재일 의원님이 내신 안인데 사실 변

재일 의원님이 여기 참고에 있는 2조 4호의 가·
나·다·라를 다 넣어 달라고 요구를 하신 거지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지금 기재부하고 과기부
하고 이야기해서 가·나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
신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가·나로도 충분하겠습
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래 법안을 낼
때는 ‘가·나·다·라 다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
다’라고 했다가.

그런데 변재일 의원님이 낼 때는 가·나·다·
라를 요구하는데 기재부하고 과기부가 같이 얘기
해서 ‘가·나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
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재일 의원님이 낼 때도 과기정통부가
이렇게 ‘가·나·다·라로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
했던 거냐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변재일 의원님이
내신 법안에는 지금 박대출 위원님 얘기처럼 연
구개발기관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냈는데 기재부
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
고 과기부가 ‘가·나 정도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한 거고, 그러면 변재일 의원님이 낼 때는
가·나·다·라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도 지금 상황으로는 다와 라는 빼도
될 것 같다고 하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은 다
를 빼도 되는지, 어쨌든 신중하게 논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아닙니다. 가·나만 해도 돼요’
라고 두 부처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내셨던 의원님
이……

그런데 제가 딱 보면 이런 법안은 부처가 변재
일 의원님한테 ‘이렇게 해 주시지요’라고 부탁했
을 수 있어서, 충분히 소통해서 가·나만 해도 되
는 거냐 이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는 합의가 다 끝난 사항이고 의원실하고도 이야
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영교 위원 그쪽 방하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예, 그래서 추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과방위에서 다 의결이 된 사항이고……

○서영교 위원 그러니 제가 보기에, 미래를 준비하고 다·라까지 넣었는데 그리고 법안을 발의할 때도 어떻게든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법안이 왔을 것이고 지금은 크게, 넓게보다는 ‘이 정도만 해 놓고 필요할 때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방사광가속기, 여기 한번 갔다 왔거든요, 대전에 갔다가. 가서 사실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어떤 일을 하는지. 되게 중요한 기초과학인 것도 알겠고.

그런데 갔더니 하는 말이 ‘이번에 전기세가 되게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잘못하면 가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뭐 때문예요?’ ‘전기세 때문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기초과학을, 광속으로 뭐 하는 이 중요한 것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중단된다면 말이 되냐? R&D 예산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저희 가던 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서 직접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오늘 더 논의를 하지만 변재일 의원님이 내신 안이니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변재일 의원님이나 현장에서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또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조문 정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박대출 위원 그러면 조문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겁니까? 지금 정리된 조문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수정의견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범위를 줄이고 존속기간을 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것은 사용허가 기한 설정하는 조항이고, 운영기관의 규정을 주는 데 대한 조항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왼쪽에 국유재산 특례 근거 법률 부분에 보시면 ‘2조 4호 가·나 목의 기관에 대한’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게 좀 이상해. 운영기관을 규정하면서 추진하는 기관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런 법이 있나,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구체화하든지 구체화할 필요가 없으면 아예 그냥 운영기관이라는 해석을 나뉘 버리든지.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류성걸 위원 차관님, 이 법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지금 논의하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뒤죽박죽 막 섞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차관님이나 또 국장님이 이걸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뒤죽박죽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사광가속기 운영·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운영·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에 그 사용료라든지 또는 양여하는 경우라면 이것에 관련되는 사항이지……

방사광가속기가 국유예요?

그런데 다목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출연연구기관이나 사립 또는 대학이 그 방사광가속기를 쓸 때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데……

그래서 이것은 방사광가속기 설치 또는 운영기관이 국유재산을, 토지든지 아니면 건물을 활용할 때 그 사용료 감면 사항입니다.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류성걸 위원 그것하고, 제가 방사광가속기가 국유인지를 여쭙보는 게 방사광가속기를 사용하려면, 들어가면 부스가 꼭 돼 있어요. 그걸 사용할 때, 외부에서 사기업체든지 출연연구기관이든지 국가기관이든지 아니면 대학이든지 개인이든지 거기 가서 부스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줘야 돼요. 그것에 대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운영기관과 또 설치기관에 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의 감면에 관련되는 사항이다,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다목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다목은 당연히 될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그리고 개념 자체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뒤죽박죽돼 갖고 마치……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해 갖고 ‘이거다’ 이렇게 하셔야지, 질문 또는 질의하시는 대로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어디서 오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과기정통부에서 왔습니다.

○류성걸 위원 무슨 과장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원자력연구개발과장입니다.

○류성걸 위원 알고 오신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오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예, 알고 왔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방사광가속기가 국유재산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방사광가속기, 과거에 포항에 만들어진 건 현재 국유재산이 맞고요. 기부채납 해 가지고……

○류성걸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그런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양성자가속기나 그다음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국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내용이 워낙 많잖아요.

차관님, 다시 이야기하겠는데, 그 내용을 진짜 정리를 딱 해 가지고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는데, 가·나목으로 제한해서, 한정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광의 해석하면 가·나·다·라·마·바·사까지 다 포함합니다, 가·나

의 범위가.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운영 기관이라고 표현해 버리면 연구개발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나 상법의 회사나 다 포함돼요, 이게 지금 배제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만일에 법의 성격상 그렇게 국유재산 사용처를 제한하겠다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 소위 대형가속기를 현재 운영하거나 구축하는 기관을 보면, 방사광가속기 중에는 포항공대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과학지원연구원도 하고요. 원자력연구원도 양성자가속기를 하고 기초과학연구원도 중이온가속기를 하고, 중입자가속기 하나는 서울대병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나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거되는 대상,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됐든 민간기업이 됐든 학교가 됐든 이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기관이든 구축기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이 법에……

○박대출 위원 아니,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든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운영·구축 기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지금은 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기존의 회사를 설명하면 민간에서 구축사업 한다 그러면 포함이 돼 버리는 거라니까, 이 법대로 하면. 이 법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민간 상법 회사에서 구축사업을 추진해 버리면 되는 거라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예, 추진하면 되는데, 저희가 원래 대형가속기법 자체에서 민간이 해 가지고 자체 개발하는 것들은 적용 제외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아니, 다른 법이면 몰라도 이 법에 따르면 지원을 하는 감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법에서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저 사람 말은 다·라를 빼면 그게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박대출 위원 법의 규정상, 법의 해석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방사광가속기는 예를 들어서 감면의 대상이 토지·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방사광가속기를 포함한 사용료를 얘기하는 건지, 임대료를 얘기하는 건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것은 건물과 토지에 한정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방사광가속기는 국유가 없다는 거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국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국유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지금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서 면제를 받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렇다면 방사광가속기가 국유라면 그 국유에 대한 사용료에 감면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어서 지금 여쭙보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면 빼도 되는 거고.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가속기라고 하면 법 정의에서 국가가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구축한 것은 이 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대출 위원 그러면 또 이것도 충돌되는 거야. 그것은 사목에 해당되잖아.

○소위원장 유동수 봐요.

차관님,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방사광가속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연구기관들이 이것 사용을 하려고 해. 그러면 사용료 감면 부분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것도 국유재산이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데 제가……

○소위원장 유동수 지금 토지·건물만 얘기하시는데, 이 법의 정의를 보면 방사광가속기가 국유재산이라면 방사광가속기 사용에 대한 감면 부분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유동수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지금 방사광가속기를 지어 주게 되면 연구개발 성과의 유형적, 무형적 성과물은 사실은 국유는 아니고요.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은 KBSI라든가 다른……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니까 연구기관의 소유가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니까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렇다면 기재부가 설명한 대로 토지·건물만 한다면 가·나로 한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발의하신 변재일 의원님 방하고는 일단 어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안이 충돌되는 문제를 내가 지적한 거라니까, 그 지원의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두 분이 하는 말이. 그걸 정리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워낙 초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민간이 하더라도 일정 규모가 된다면 하면 그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해 버리면 법의 충돌은 없어. 그런데 민간에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다 해 놓고 법 자체는 민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대상이 아니고 한쪽에는 대상이 되는 길을 열어 놓으니 이런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소위원장 유동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바쁘니까요.

○서영교 위원 제가 잠깐 변재일 위원님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소위원장 유동수 말씀해 보시지요.

○서영교 위원 어떻게 변재일 의원님이 이 법안을 만들 때는 과기부랑 이야기를 해서 이 안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다·라는 향후 미래의 이야기고 그래서 가·나 정도로만 해도 저희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기부하고 얘기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다리를 굽고 있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또 비쟁점이고 지금 빨리하자고 한 거니까……

아니, 공부를 좀 덜 하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해요, 정부 관계자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딱딱딱 잘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얘기하고,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소위원장 유동수 차관님, 박대출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자료 좀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가·나를 한다는 게, 사까지 완전히 다른 조항이 들어 있어.

그 조항은 어디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의 조항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나 하면……

○박대출 위원 이 조항은 라까지만 있잖아. 그건 사까지 있었잖아. 사까지 있는 조항은 어디에 들어 있는 내용이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혁신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예, 거기 있는 국가연구개발기관이라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여기 가·나를 하면, 방사광가속기 특별법의 가·나는 지금 연구개발법의 가·나·다·라·마·바·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법으로 보면.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기관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라고.

○소위원장 유동수 의사일정 제4항은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박대출 위원님 제기한 문제는 명확하게 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박대출 위원 그것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계속 심사하나요?

○소위원장 유동수 예.

○서영교 위원 위원님도 되고 다 돼 있는데, 빨리

리하자고 하시면서……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 이 문제만, 박대출 위원님 문제 해결되면 그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

○박대출 위원 설명이 필요하면 하세요.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여기 지금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추진하는 기관 자체가, 저희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고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서영교 위원 국고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예, 국고로 지원하는 범위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국고로 지원은 한정인데 민간이 들어가잖아요.

○서영교 위원 그건 다목에.

○박대출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다 포함되는 거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최문기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보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박대출 위원 아니,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위원님, 이게 설명이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소위원장 유동수 차관님, 자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심사할 법이 많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알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A 법 다르고 B 법이 다르면 안 되지.

○소위원장 유동수 박대출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아 수석전문위원님, 광주·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한 무상양여 특례 신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의사일정 제5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승래 의원안입니다.

자료 22쪽입니다.

광주·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해서 현재의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가 가능한 것에 더해서 양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과기부로부터 양여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논의하기로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이, 4대 과학기술원과 관련된 법을 다 발의하시면서…… 정부 국유재산이나 지자체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양여, 사용료 감면, 대부이 세 가지가 4개의 법에 어떤 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안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맞추려고 4개 법을 다 발의를 하였고, 그러다 보니 지금 무상 양여와 관련해서는 현재 올라와 있는 2개 기관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법안으로 제출한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무상 양여를 꼭 해야 되느냐 또는 실제로 그런 필요성이 현재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무상 양여의 수요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이고, 다만 법체계상으로도 다른 2개의 기술원에는 무상 양여 규정이 있는데 2개가 빠져 있어서 그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법이 된 거고 결국 그거에 따라서 저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도 그 내용을 균형을 맞춰서 반영해주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포함하는 것이 맞고 당장의 실익이나 이런 부분을 봐 가지고는 그 수요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논의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무상 양여를 빼고 의결하는 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저희 기재부로서는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박대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취지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여할 실익이나 양여하는 선례들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현재까지 없었

고 당장의 수요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법 조항을 만든다고 해서 특별한 다른 사례가 생기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여기 23페이지 위에 보면 울산과학기술원법하고 한국과학기술원법의 특례 유형이 있는데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29년 12월 31일까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과학기술원법하고 한국과학기술원법하고 존속 기한을 정해 갖고 양여를 예외적으로 해 놓고는, 지금 이 법은 존속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존속 기한 없이 양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통과시키고 나서는 존속 기한이 없으니까 이것도 존속 기한을 없애자 이런 식의, 완전히 술수라고밖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 현재 저희들 논의하고 있는 두 가지에는 26년 말로 존속 기한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번 거는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번 거는요.

○서영교 위원 26년 말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기통과된 거는 29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양여를 하는데 존속 기한이 29년이고, 이거는 완전히 꿈수예요. 양여하고 나면 29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별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 아니고……

제 얘기는 이 법을 해 놓고 나면, 이게 땅을 준다는 게…… 100평, 200평 주겠어요? 주면 5000평, 1만 평을 줄 텐데, 그건 대형 투자랑 마찬가지로 국회 심사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국유재산을 과학기술원에 주는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는 사람하고 국유재산 쪽하고 행정부가 상의하면 그게 되기 때문에 국회 심사권에서 벗어나는 투자, 그러니까 토지 투자다 이렇게 봐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소위원장 유동수 양여는 지금 기재부 쪽에서는 빼는 걸로 아까 수정 동의해 주셨지요?

○박대출 위원 양여 표현을 아예 빼 버린다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위원님들 의견 모아 주시면 양여를 지금 대상에서 빼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이수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류성걸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아,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양여를 뺀다면 지금 현행대로 두는 겁니다, 개정하지 않고.

○**양기대 위원** 대구·경북이네.

○**서영교 위원** 대구·경북이 있어.

○**류성걸 위원** 그게 아니고……

○**서영교 위원** 다른 데 다 그렇게 했는데……

○**류성걸 위원** 지금 KAIST하고 UNIST하고 DGIST하고 GIST하고 4개 과기원이 있는데 2개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2개를 넣으려고 할 때 양여를 빼자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서영교 위원**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지고 가는 것 이런 건 아니고 과학기술원을 만들어서 나라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농담 삼아 대구·경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과학기술원은 나라가 만들고, 나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갖고 가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기존의 것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누구 소유가 아니니까, 과학기술원이 하는 것은 나라 거고, 과학기술원도 나라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김영선 위원** 아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유재산이나 국영기업을 처분을 할 때 국회 심사를 받자고, 그러니까 경영 처분하는 것도 심사 받자고 그러면서 국유재산 자체를 양여하는 거를 심사 없이 양여하자는 거는 기조가 서로 충돌되는 것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심사를 해야 하나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영규** 양여를 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하게 되면 기재부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재부장관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은 행정 심사지요. 국회 심사는 아니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영규** 그리고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매년 그 전해 9월까지 예산안과 더불어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여계획도 국회 서류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과학기술원에 양여를 하게 되면 과학기술원 땅이, 국유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소위원장 유동수** 넘어가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없어지는 건 아니고……

○**김영선 위원** 없어지는 거지요.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니까 과학기술원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과학기술원은 누구 재산이에요?

○**김영선 위원** 독자 재산이에요.

○**서영교 위원** 과학기술원은 국유 아니에요?

○**소위원장 유동수** 과학기술원 거지요.

○**김영선 위원** 공공기관.

○**서영교 위원** 공공기관이니까 과학기술원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가져가는 거고 공공기관은 어쨌든 국가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김영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국유재산을 함부로 팔지 마라 이런 법이라서 또 조금 다른 내용인데 어쨌든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의사일정 제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설득해서 통과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유동수** 아닙니다. 두 분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의 뜻을 따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당 의원님들이 낸 것만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일치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되면 그것도 약간 불편한데요.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갖고 다 안 되면 무슨 법안이 통과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유동수** 예.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3)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8)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7)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4)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345)

(10시52분)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6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64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두 가지 사항인데 요.

임직원의 성매매 범죄,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 음주운전 등의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것과 통보된 수사 결과에 따라 정관에 따른 징계처분을 명문화하거나 또는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을 해임 건의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수사 사실 통보입니다.

현행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경우에는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종료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 외에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수사·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강대식 의원님 안의 경우는 성범죄, 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김선교 의원님 안은 성매매 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조금 더 다양한 범죄 유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모든 수사 사실이 통보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에 관련된 사건만 통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상혁 의원안의 경우 국가보안시설의 임직원의 비밀 누설의 죄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시설이 공공기관이고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현행에 따를 때에도 수사 사실이 통보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안, 박상혁 의원안에서 조문에 ‘비위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52조의3 2항은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비위행위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6쪽의 부칙에 시행일은 적용례로 이 법 시행 이후 조나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임직원 비위행위에 대해서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느 범죄까지를 수사 통보 대상으로 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성범죄, 그러니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플러스 음주운전 여기까지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가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도 이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범위는 그 네 가지로 정하는 게 전체적인 정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네 가지 뭐뭐요? 다시 한번 불러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성매매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 성매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확하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성매매, 성폭력 그리고 성희롱, 음주운전 이 네 가지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추행은 빠지고?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가 말씀하신 것은 67쪽부터 69쪽의 수정의견에 실었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수석전문위원님,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수정의견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김영선 위원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것을 왜 넣었어요? 음주측정 불응은 아직 유죄·무죄가 확정되기 전의 절차적인 건데 너무 확대되는 것 아닌가?

○김주영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공무원들에 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별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주는데 상은 공무원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는 부분, 물론 파렴치범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무원들은 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공기업 다닌다고, 공공기관에 다닌다고 해서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한정 없이 모든 범죄 사실이 통보됩니다.

○김주영 위원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다 그래도 다 통보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은 범위를 한정해서……

○김주영 위원 아니, 도둑질을 했다 그러더라도 그게 명확하게 입건이 되고 수사를 해야 통보가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범죄 유형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통보 대상의 범죄를. 공무원은 모든 범죄가 다 통보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주영 위원 지금 공공기관도 웬만한 거는 다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직무와 관련해서만 통보됩니다.

○박대출 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선 위원 69페이지 수정의견에서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은 너무 확대하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유동수 김영선 위원님,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은 좀 과하다?

○김영선 위원 음주운전까지는, 음주운전이라고 확정이 됐을 테니까 통보하는 게 맞는 게 측정불응은 음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단지 불응했다고 해 갖고 범죄로 확정된 거랑 같이하는 것은 조금……

○박대출 위원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불응 외에 취소 요건에 해당되거나 정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중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소위원장 유동수 박대출 위원님, 발언권을 좀 얻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 죄송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일단 박대출 의원님 안이나 김선교 의원님 안이나 다 불응을 포함하는 안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를 포함한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음주를 했는데 아예 ‘나는 측정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응까지 포함해서……

○소위원장 유동수 공무원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징계 관련한 조항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범죄에……

○소위원장 유동수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이 들어갑니까?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영규 예, 다 들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김영선 위원님은 어떻게……

○김영선 위원 음주측정을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라든지 그런 죄가 돼요. 그러니까 죄가 확정이면 모르겠는데,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도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측정을 불응하게 되면 불응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음주측정 자체에 대해서 불응했다고 이게 죄가 되지는 않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위원님, 이 조항이 이런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할 때 그 수사 개시한다는 것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라 이런 조항입니다, 처벌을 하라 마라 이런 조항이라기보다는. 그 점을 좀……

○소위원장 유동수 통보 조항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통보 조항.

○이수진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유동수 예.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음주측정불응죄가 있고,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통보가 되고, 그러면 공공기관 직원들은 음주측정하려고 그러면 막 거부를 해 버리면 통보 안 되고, 음주측정불응죄가 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하는 게 낫겠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리고 뒤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징계 여부는, 그게 확정돼야지 결국 징계가 될 겁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렇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항목은 잠정 의결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소위 자료 72쪽입니다.

이 부분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하는 부분입니다.

조사·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필요한 경우 정관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박상혁 의원안이 고요.

박대출 의원님 안의 경우, 지금 현재는 임원의 해임·해임요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을 임직원에 대한 수사상황 통보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해임·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안은 임직원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

계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직원의 해임·해임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해당 사실을 은폐하여 징계를 면하는 사례나 수사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부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 사례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혁 의원안과 같이 공공기관 자체 정관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박대출 의원안과 관련하여, 범죄 등 비위행위의 경중 없이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해임요구가 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를 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일부 수용하는 의견으로, 저희가 73쪽에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일단 이 조문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현재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가능한 사유’로 돼 있는데 이것을 ‘임직원’으로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할 경우는 체계상 경미한 경우도 바로 해임을 요구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3페이지 박상혁 의원안과 같이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으로 직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체계상으로 맞을 것이다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할게요.

검토의견과 정부 의견에서 지금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비위행위의 경중 없이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해임요구’, 이것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비위행위의 경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경중이 가려짐에 따라서 경미한 행위를 한 경우가 된다면 이것은 해임이나 해임요구 가능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이건 필요한 경우라고 포함돼

있으니까. 이것 징계위원회든 뭐든 통해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이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 의견은, 여기에서 ‘임직원’이라는 말을 빼고 기존의 조항 53조의2 2항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것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장소만 옮기는 거라고요. 그것을 법조문의 위치만 옮김으로써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만일에 지금 이 조항에다가 ‘임직원’이라는 표현을 넣는 것과 이것을 빼고 53조의2 2항에다가 ‘임직원’이라는 표현을 넣는 것과하는 법 형식 논리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검토의견에 대한 동의가 되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영규 공공정책국장 강영규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52조의3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이라고 해서 이게 일반규정인데 여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정부나 주무 부처 장관이나 이런 데서 비위행위를 발견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을 찾았을 때 수사 의뢰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죽 기술하다가 거기 3항에서 기재부장관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임원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조의3 3항은 일반적인 규정으로 정부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라’라고 얘기하고 임원이 잘못된 게 있으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원래 박대출 의원님께서 제시한 조항은 53조의2로, 거꾸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공공기관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적절한 징계를 못할 경우가 생긴다라는 데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53조가 조금 전의 수정의견대로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임직원’에 대한 내용을 53조의2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53조의2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처분을 한다, 처벌을 한다라고 그냥

거기에 규정하는 게 조문 체계상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지요.

원래 공운법은 대부분 임원의 징계를 얘기할 때 직원’에 대한 징계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은 그냥 그 내부 정관이나 내부 직원 강령이라든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니까 굳이 공운법에서 정리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52조의3은 임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끝난 거고요.

그런데 거꾸로 53조의2는 직원이든 임원이든 누구든지 잘못된 게 통보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임직원’으로 쓰게 된 거고, 그러다 보면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는 게 53조의2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서 체계상 53조의2로 받는 것으로 정부가 의견을 낸 겁니다.

○박대출 위원 어쨌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강영규 예, 차이는 없는데요.

○박대출 위원 형식상 이러나저러나 차이 없다면 저는 그것은 동의를 할게요.

○소위원장 유동수 예.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차관님, 지금 박상혁 의원안 53조의2 제2항 필요한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엄밀히 본다면……

○류성걸 위원 필요가 없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형태의 법이라면 법은 수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문구의 법은……

처음에 제안하실 때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구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세 가지가 지금 임의적으로, 앞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문구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 취지에 관련되는 사항은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하든지 또는 다른 것을 해야 되지만 문구에 관련된 사항은…… 저는 이런 문구에 관련해서는, 이 법 문구는 결과적으로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문구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집행하는 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취지는 아마 이게 통보 조항이 들어가니까 그 이후의 절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결성을 기하자 하는 그런……

○**류성걸 위원** 그것은 통보받은 기관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써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 관련되는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임직원에 관련되는 사항들도 공운법을 행정부에서 만들 때, 저도 직접 만들었습니다만 다 뜻이 있고 또 배경이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사항을, 직원에 관련되는 사항도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 류성걸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이제 절차적인 규정이 있는데, 저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빼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꼭 넣어야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징계처분이 고려되고 예정 루트를 주는 것이, 이게 있으면 좋고 꼭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수정의견대로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법을 통과 시키기로 했으니까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이것 해로운 조항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또 수정안을 내고 딜레이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통과 시킵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엄밀하게 하면 중요한 거나 안 중요한 거나 다 걸려 가지고 우리 기재위는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통과시키는 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소위원장 유동수**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대출 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조항을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의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따라’, ‘경우에는’, ‘따라’ 3개가 있거든. 이것 하나로 하면 안 되나?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필요한 경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빼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정관과

거꾸로 할 리도 없는 거고 안 필요할 때 할 것도 없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한……

○**김영선 위원** 이거는 주의적 규정이라고 해서 해롭지도 않고 넣어도 무방하니까 그냥 넘어가자고요.

○**소위원장 유동수** 양기대 위원님.

○**양기대 위원** 이 법안은 가급적이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통과를 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세세한 문제들은 지금 조정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저도 좀……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김영선 위원** 일단 김주영 위원님 말씀 듣고……

○**소위원장 유동수** 예.

○**김주영 위원** 사실 징계에 관해서는 공기업마다, 공공기관마다 사규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사실 다 징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이 안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잠깐만.

위원님, 이건 주의적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장애가 생기는 거 아니니까 주의적 규정 정도는 좀 봐주고 넘어가야지.

○**소위원장 유동수** 전문위원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75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더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와 관계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7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제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각 기관이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하면 국회 의안과에서 소관 상임위·예결위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법 40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안의 경우에는 그 확정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거 의안과에도 내고 직접 냅니까? 의안과에는 안 냅니까? 의안과에도 내고 상임위에도 냅니까? 의안과에는 아예 안 내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의안과에 내면 의안과에서 상임위원회로 배포합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직접 내는 규정이라면서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그것을 대체하는 조문입니다. 지금 사실상 의안과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로 배분하게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이 되면 의안과에도 소관 상임위에도 직접 내냐, 아니면 의안과에는 안 내느냐 이거지.

○박대출 위원 이 법대로 하면 안 내도 되는 거지.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안과는 빠지고요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게 되면 의안과에서 총법안 정리가 안 돼. 법안 정리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김영선 위원 그렇지. 법안 정리가 안 되지.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지금 이거는 법안은 아니고 결산서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결산서라도. 국회의 모든 위원회가 따로 노는 게 돼 버려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임형철 국고국장 임형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할 때에는 의안과에도 제출을 하고요. 전체 의원실에 각각 다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한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하는 업무는 바뀌지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바뀌지 않아도 규정에 ‘국회’를 살리면서 해야,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낼 때 의안과에도 하나 내면 국회 전체에서 켜 되는데 아니면 시간이 걸리고 이게 굉장히 번거롭게 돼요.

그러니까 ‘국회’도 살리고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대출 위원 그러면 이거 법을 바꿀 이유가 없는데, 바꿀 이유가 없어.

○김영선 위원 아니지, 상임위에 직접 내는……

○박대출 위원 아니, ‘국회에 제출’이라는 이 현행 항목으로 국회 의안과에 내고 해당 상임위에 다 제출하도록 하는 관행이 지금 형성돼 있고 이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법을 바꿔 버리면 소관 상임위나 예결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돼 버리는 법이 돼 버리고 실질적으로 또 의안과에 제출하더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법이 되는 거지.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걸 명시화하자……

○박대출 위원 명시화하려면 다 넣어야지.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다 넣어야 되지.

○박대출 위원 예를 들어 명시화하자 그러려면 국회 의안과와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각각 제출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법을 개정할 이유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제가 오늘 비판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 법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삼석 의원님이 발의를 하실 때 예결위도 한다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배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좀 전에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회가 1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접수가 국회 의안과에서 당연히 접수가 돼야 됩니다. 각 의원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회의원한테 배포하는 거는 사실행위로서 배포하는 거고 법률행위로서 배포하는 것은 국회에 1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관련되는 사항을 다 포함을 하려면 ‘국회에 제출하고’, 사실 국회 내부에서 해야 될 것을 법에 넣는다는 자체도 좀 웃기지만, ‘국회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이 규정도 필요가 없는 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출 위원 좀 쉽게 정리해 주시지요. 위원장님이 전권으로 정리해 주세요, 별것도 아닌데.

○소위원장 유동수 이 법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77쪽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의 단계별 제출 기간 조정 및 국회 제출 기한 단축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결산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단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이 고요, 기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하는 날짜를 8월 20일로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7월 30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절차 단계별로 날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기간을 2월 28일에서 3월 15일로 좀 여유를 두고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좀 단축하자는 것인데요.

77쪽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을 단축해 달라는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중 회계검사 대상은 정부 지분을 50% 이상인 기관에만 한정돼 있고 또 외부감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안은 실현가능한 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사원 결산검사 기간이 축소되는 반면에 정부는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의 관련 부서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결산검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78쪽에 단계별 제출 기한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공공기관이 결산서 작성하는 시간은 현행과 비교해서 한 15일 정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은 한 20일 정도 당겨지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2에는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 방안을 첨부하였고요.

그리고 81쪽은 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거는 국회 결산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이 절차를 좀 당겨라,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취지에 따라서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최대한 당긴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한 20일 정도 당기는 걸로 그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박대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정부나 공공기관들의 판단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박대출 위원 무리한 부분이라는 내부 불만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거는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정리하지요. 존중하지요.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날짜를 칼같이 맞추다 보니까, 7월은 31일까지 있는데요. 굳이 이게 7월 31일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

그래서 다른 데는 날짜로 했는데 7월 말까지로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예, 7월 31일까지.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7월 31일 해도 되고 아니면 7월 말까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좋은 말씀이네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동일 제명의 안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로 있으므로 이 안건은 잠정 의결하고 다른 안건의 논의가 마무리되면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080)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79)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1)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19)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6)

(11시25분)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0항까지 이상 5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의 1쪽에 보시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 5건입니다. 정부안 2건과 의원안 3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먼저 별도 처분 없이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확장제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국가계약에도 적용하는 확장제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약 시에 복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진신고 등을 통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감면받을 때 국가계약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중앙행정기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별도의 처분 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확장제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고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별도의 처분 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확장제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 기간 동안 각 중앙관서에서 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서 별도의 처분 없이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과 운영석 의원안은 형식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만 시행령을 통해서 사실상 확장해서 제재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법률유보의 원칙상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그 확장제제 효과를 직접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개정안같이 ‘제한된다’라고 규정한다면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별도의 처분 없이 모든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입찰참가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별도의 처분이 없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의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관련 조문으로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를 실었고, 참고에 확장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누구인지 7쪽에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개정안을 낸 취지는 확장제제, 그러니까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입찰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한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행법에서는 다시 입찰자격을 통보받은 기관이 또 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기관의 조치 없이도 한쪽 중앙행정기관에서 입찰자격 제한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입찰자격 제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낸 거고요.

그 배경의 하나로는 대법원에 소송이 걸린 판례에 있어서, 확장효의 적용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현행 조문상 별도의 중앙행정기관 별로 조치가 없으면 그 확장효는 적용되지 않는 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관되게 효력이 적용되는 걸로, 그러니까 확장 제재효가 적용되는 걸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입찰 제한이라고 하면 관련된 그런 사업 하는 분들에게는 일차적인 치명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확장한다는 개념이 과연 입법일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들테면 A 사업자가 하고 있는 가의 항목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문제가 있었는데 B의 항목은 해당 사업자에 관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는데,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를 할 수가 있는데 한 항목에서 잘못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 제한을 받아서 그 업체 전체가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부정…… 담합이라든지 제한된 어떤 특정 사안을 제가 짚을 수는 없겠지만 좀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이미 한 중앙관서로부터 입찰자격이 제한되면 그게 입찰자격이…… 지금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건데 이걸 그냥 아예 연좌제처럼 묶어 버려 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간다 이렇게 해 버리는 건 좀 과잉 입법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입찰을 투명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취지는. 기업의 활동을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네요.

○소위원장 유동수 김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아니, 수사도 범죄가 있어도 개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별건수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갑돌이가 큰 삼성 슈퍼에 가서 절도했다고 다른 슈퍼에 출입도 못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떤 처분청에게 다른 확장효가 없다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상식과 공정에 의해서 관사들이 판결을 했는데 판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확장하겠다는 거는, 점점 민권이나 개인 자율이 넘어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은 소소한 것 같지만 좀 터무니가 없어요. 이 법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관이 다루는 거는, 업종이나 영역이 달라 가지고 다른 기관들이 쫓 있는데 그 기관마다 본래의 목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한 부처에서 뭔가 위법행위를 하면 완전히 다른 부처의 모든 것을 봉쇄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사항이나.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지요. 빅 시스템의 경우에는 대기업들만이 전산망 같은 걸 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부처에 가도 결국에는 한정된 몇몇인데 그 회사가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가지고 징계를 받아야 될 만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옷을 납품했는데 옷에 관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구성 때문에 뭔가 범법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는 마대자루를 납품하는 건데, 그건 시장이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무리한 거다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9쪽, 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확장제재 근거 신설인데요. 지금 계속 심사하기로 한 것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 이 건은 그러면 검토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설명할 때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내용이 좀 많아서 분리를 했었는데요.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 심사를 할 때 가만 설명하시고 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나도 만약에, 가·나가 관련이 있다면 한꺼번에 나까지 설명해 주시고 한꺼번에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냥 넘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번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16쪽입니다.

16쪽은 낙찰자 결정 시 복수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따라서 복수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두 번째로 해당 내용이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정부안과 홍성국 의원님 안의 경우 단가계약에 한해서만 복수의 낙찰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영식 의원님 안은 계약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모두 다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단가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제조, 구매, 수리 등이 필요하나 수요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고, 총액계약은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총금액, 그러니까 총수량 곱하기 단가를 포함한, 단가로 결정되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하는 계약 방법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히 정리를 해 봤고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1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수요 빈도가 일시에 집중되거나 여러 기관의 수요가 급증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복수 낙찰자 결정의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안의 경우 복수 낙찰자 결정 요건으로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필요성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상 모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복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계약 종류를 구분할 실익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이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계약 종류에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을 구분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운영식 의원님 안과 같이 총액계약도 포함할 경우 이를 일반적 낙찰자 결정 기준인 10조에서 규정하는 개정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20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면 정부안과 홍성국 의원님 안, 운영식 의원님 안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운영식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부안은 단가계약 부분만 해서 복수 낙찰자를 하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운영식 의원님이 제시가 되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감정평가기관을 2개 이상 정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총액계약이라도 복수 낙찰자를 정해야 될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식 의원안대로 단수·복수를 다 하는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의 토론·질의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데 복수 낙찰 개념이 있습니까, 지금? 처음 도입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처음 도입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박대출 위원 처음 도입하는 만큼 명확하게 결정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명확하게 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앞으로 할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 성질상 특정을 해서 예시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검토의견도 주시고 해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복수 낙찰자를 정한다는 게 타당한가요? 검토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단가계약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부안을 냈고요. 그런 요건을 충분히 정할 수 있는데, 복수 부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 정도를 저희들이 상정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일일이 요건을 정하게 될 경우는 계약의 성질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김주영 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안도 나온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거는 국고국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케이스인지.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임형철 국고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같이 공무원들이 행정 현실상에서 바라보면, 아까 말씀 올렸던 것같이 한번 입찰을 해서 1명의 낙찰자를 정해야 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보면 한 번 공고를 했을 때 두 사람 이상을 낙찰을 해야 할 경우가 사실상 되게 많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보고드렸던 것같이 저희가 국유재산법령상의 처분재산 예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토지대장상의 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보면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복수 낙찰자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저희가 집행할 경우에는 한 번 입찰을 해서 낙찰자 1명 정하고요. 다시 또 공고를 해서 똑같은 절차를 한 번 더 해서 두 번의 절차를 해야만 이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수 낙찰자 부분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법상에 보면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차관께서 말씀드렸던 것같이 대통령령으로 만약에 위임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잘 봐 가지고 유형화해서 대통령령상에서 규정을 좀 상세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항목은 잠정 의결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22쪽입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감면 시 국가계약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역시 감경·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내용이고요.

2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 및 원활한 협조 등을 독려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감면제도 도입 시 취지와 달리 발생할 부작용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다음과 같은 점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정부안과 관련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감면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 절차를 선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위의 요청을 선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정부안의 경우 공정위의 요청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요청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홍성국 의원님 안의 경우 개정안 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감경 대상 부정당업자를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요청이 있는 자, 즉 제27조 1항 5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실제 활용된 적이 없고 2호인 중앙관서의 장이 담합한 자를 제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적용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감면을 각 중앙관서별 재량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의무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고 또 감경만 허용할지 면제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입법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5쪽은 정부 의견이라 생략하고요.

참고로 26쪽부터는 참고조문입니다. 공정거래법 등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30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조항은 정부안도 그렇고 홍성국 의원님 안도 그렇고 공정위 쪽에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 경감하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입찰참가자격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으면 그걸 감경해 주자 하는 취지로 두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개별적인 요건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맨 마지막에 정부안과 홍성국 의원님 안에 대해서 각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양해해 주신다면 국고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국고국장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임형철 국고국장입니다.

22페이지에 있는 정부안과 홍성국 의원님 안을 비교해 보면, 감면을 할 때 27조 제1항제5호를 언급하고 있는 게 홍성국 의원님 안이고요 저희 쪽은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 같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반을 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게 좋다고 관계부처에 통보를 하라고 하는 게 1항 5호의 내용인데요,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이 5호를 활용해서 공정위가 각 부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각 부처가 각 기업들과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업이 공정위의 과징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5호를 활용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호의 내용을 활용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홍성국 의원님 안과 같이 만약에 제1항제5호만 언급을 할 경우면 이 부분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로 공정위의 관련 법에 이런 공정위의 과징금 행위가 있을 경우에 공정위가 다른 부처에 알려 준다고 하는 규정을 넣어야만 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위법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홍성국 의원님 안으로 할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제1항제5호만을 언급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2호를 활용해서 각 부처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언급 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종합해서 한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 정부안의 27조 2항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에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이렇게 넣으면 홍성국 의원님 안도 반영을 하면서 실제 행정 현실에서 각 부처가 활용하고 있는 2호도 반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지금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임형철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어떤 기업에……

○류성걸 위원 아니, 공정위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감면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임형철 지금 2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기간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임형철 각 주무 부처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아홉 가지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정부안을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 그러니까 부정당업자라는 것은 그 아홉 가지 유형에 의해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임형철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아홉 가지 부정당업자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정거래법 제44조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이것만 해당이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가계약법 제27조의 아홉 가지 사항을 전부 뭉뚱그려서 공정거래법 제44조의 감면 규정에 걸어서 해 주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 해당이 된 사항만 공정……

그래서 저는 취지로 봐서는 홍성국 의원님 취지가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홉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되는 걸 다른 부정당업자로 제한하는 그런 원인행위에 전부 걸어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래서 아까 국고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홍성국 의원님 안으로

하되 제1항제5호 말고 제2호를 같이 넣는, 수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그 대안도, 2호는 공정거래법에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예컨대 6호를 한번 보십시오. 6호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기벤처부 장관이 입찰 제한을 요청했는데 중기벤처부 장관은 분명히 제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항을 걸어서 감면을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해 주겠다 이게 저는 안 맞다고 봐요.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하면 몰라도……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8호를 한번 보십시오.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

그래서 관련되는 사항을 통쳐서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결론은 홍성국 의원님 안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동의를 하시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두 가지인데요. 아까 5호 말고 2호도 넣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기관의 재량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거에는 동의하시나요,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아니, 제가 동의하고가 아니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논리의 문제기 때문에, 관련되는 논리가 있고 어떤 범위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넣고 저렇게도 넣을 수 있는데 논리가 거기에 안 맞을 때는 일단 배제를 해야 됩니다. 제 주장은 그거예요.

제가 아까도 법 관련돼서, 개인적으로는 법제실무를 하면서, 일단 대상을 정하고 그걸 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법에 의해서 되어 있던 사항을 전부 다…… 아까 2호에 관련되는 사항도 이게 꼭 공정거래법에 관련되는 사항만 해당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해져 있는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 때, 다른 법에도 감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정거래법

제44조처럼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 통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시간이 다 돼서……

이 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수정안이든지 아니면 정해진 안을 오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논의하다가 만 것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감면 시 국가계약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면 근거 마련을 심사하면서 정부 측에 30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정부안과 홍성국 의원안을 조합해서 정부 측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조문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인데요. 여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 이게 담합에 의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그 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진신고 등을 통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류성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또 홍성국 의원님 안에 따른 대상을

명확히 했고요.

대신에 공정위에서 요청하는 조항은 현실적으로 2호에 따르면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홍성국 의원님 안의 ‘감경하여야 한다’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재량 조항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준비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에는 마 번 중앙행정기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 마련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31쪽입니다.

개정안은 중앙부처와 퇴직공무원 간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사실을 기관의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관 스스로 퇴직공무원을 전관예우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과 수의계약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과 같은 엄격한 기준의 적용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계약사무규칙에 따라서 퇴직자와 그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를 고려할 때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관련해서 법적 근거만 국가계약법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2쪽의 정부 의견입니다.

먼저 국정원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개정안에 따라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게 되면 보안 유지라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재부의 의견은 생략하고요.

36쪽부터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한다는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계약법상에는 퇴직 지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국가계약법상에 처음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법체계상에서 보면 국가계약법에서는 경쟁입찰 원칙의 예외로서 수의계약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의계약 대상 등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 열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제안이 됐습니다만 원칙적인 부분을 법에 적고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대 위원님.

○양기대 위원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차관께서 얘기한 대로 현행 지방계약법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게 통과될 경우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됩니다. 균형을 맞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양기대 위원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물론 원칙론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인데, 현실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시행령에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시행령에 취지를 담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말씀해 주세요,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그러면 차관님, 이걸 어떻게 안을 만드신다는 거지요? 대통령령에 세부적인 걸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소위원장 유동수 그 조문을 좀 완성해서 가져 오지 그랬어요.

○류성걸 위원 안을 만든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조문은요, 그 조문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와 퇴직공직자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류성걸 위원 누구하고? 퇴직공무원하고 수의계약을 제한할 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각 중앙관서와 퇴직공직자와의 또는 퇴직공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소위원장 유동수 이 내용도 아까처럼 완성된 안을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항목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068)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67)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6)

(14시22분)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3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하는 것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확장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것 그리고 또 제재금 관련 조문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39쪽부터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무화입니다.

먼저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여야 한다고 기속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제한됨에도 현행법에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과 실제의 괴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의 불이익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준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는 국가계약법 27조를 전면적으로 준용하여 현장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공공기관에게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그 당시 국가기관과 구분을 둔 이유 그리고 그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40쪽에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교하였는데요, 적용 요건과 재량인지 기속인지 등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41쪽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도입 배경 등을 참고로 정리하였습니다.

42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은 입찰참가자격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최근에 공공기관 계약 과정에 부정당한 행위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 기재부령을 통해 가지고 기속 행위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취지나 현재 운영하는 걸로 봐서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면요, 아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는 업체지만 국가의 안보나 국방이나 이렇게 특별히 또 기술적으로 유일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렇게 기속으로 했을 때 예외조항이 있나요, 다른 데서?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장 정동영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장 정동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장 정동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 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1호에 보면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 그건 제재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런 제재를 받았는데 지금 이걸 확장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입찰자격 제한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국가안보나 또 필요에 의해서 유일한, 기술적으로 독특한 업체의 경우에도 이 조항에 기속되느냐 그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 예외조항은 말씀하신 딱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입찰참가제한을 할 때 그런 요건으로 해서 제한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은 없고요.

다만 또 뒤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제재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으려고 그러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니까 그건 제한에 관한 얘기고, 제재금으로 제한을 받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 이미 제한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입찰을 못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속으로 되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지금 현재 입찰참가 제한에 대해서 제한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뒤에 법안이 또 하나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게 제재를,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는데 경미한 경우나 이런 경우는 돈으로 내고 입찰참가자격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지금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지금 류성걸 위원님이 낸 안은 경미한 부정당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말씀하시는 것은 중하더라도 안보와 관련된 이런 건 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소위원장 유동수 예, 전시라든지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해 놓은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감염병의 상태라든지 국가가 굉장히 위급하고 위난에 처해 있을 때, 그럴 때조차도 이렇게 법을 위반하지 말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걸 재량행위로 두고 거기서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도 그렇게 걸러지고 있다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데 현행 공운법 조문인데요. 공운법은 국가계약법하고 다르게, 국가계약법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제한이 의무적으로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제한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성 이런 측면에서 재량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해 뒀고요, 법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공공기관들이, 재량행위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제한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입찰 과정에서 부정당행위라는 게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게 제한이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기속으로 정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주면 어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면 그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장 정동영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장 정동영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는데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규정하면……

○소위원장 유동수 다른 법률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장 정동영 그것까지는 저희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서 규율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게 없다면 조항을 넣고 시행령에서 다루면 어떨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에서 논의하다가 중단하신 국가계약법에도 지금 그 문제가 있고요.

○소위원장 유동수 똑같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여기에도 있고 해서 맞추려면 사실은 같이 맞춰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지방계약법은 사실은 규율이 달라지는 체계가 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지방계약법은 우리 소관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아닙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래서 그건 어쨌든 건의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성걸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전시 또는 준전시 상태는 충무계획이 바로 발효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비상 관련되는 사항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상 때는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되었을 때의 이야기기 때문에 저는 별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번 찾아보십시오.

○소위원장 유동수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43쪽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확장제재 근거 신설입니다.

지금 현행법은, 공기업 등은 계약의 적정한 이

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이 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공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계약법, 공운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확장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확장제재를 준용이 아닌 공운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계약법의 준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확장효를 허용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현행 공운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아님에도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나 공운법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48쪽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류성걸 위원 수석님 죄송합니다만 아까부터 계속 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맞춰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지금 말씀한 게 몇 쪽이에요? 48쪽?

○류성걸 위원 수석님 말씀은 47쪽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죄송합니다. 자료를 메일로 발송하고 다시 인쇄하는 과정에서 한 페이지가 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법 조항을 해 주면

저희가 찾아갈게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공운법과 지방계약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과 같이 한다면 지방계약법상 넓은 자격 제한사유가 그대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장제재의 요건이 되는 다른 법률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해서 다른 법률까지 포괄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법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별도의 처분 없이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고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도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 가 번에서 저희가 논의한, 현재 공운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할 때 바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제한해야 하는 것, 재량이나 기속이나를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만약에 현행대로 둔다면 조금 고려해야 될 점이, 현행 공운법의 경우 공운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재량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기속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조항이 사실은 앞부분의 국가계약법에도 같이 있었는데 논의를 나중에 함께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처분 없이,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다른 별도의 조치 없이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는 규정을 넣겠다는 취지고요.

전문위원님 의견 주신 것 중에 다른 법률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방위사업법 이렇게 네 가지 법률을 열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법률을 빼고.

그런데 앞으로 또 그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이 생겼을 때의 문제가 하나 있고 지방계약법, 계속 얘기드리어서 죄송합니다만 지방계약법상으로는 다른 법률에 따른다고 표현이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그걸 명확하게 하자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개 법률로 명시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운법 관련해 앞에서 얘기했던 의무사항 기속 그 문제는 정해지는 데에 따라서 조문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재를 받았는데 입찰이 허용된 케이스들이 많습니까? 원칙적으로 내부규정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공기업들이?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입찰자격의 제한을 받게 되면 당연히 대부분의 공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은 다 지금까지 입찰을 제한하지 않았을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위원장 유동수 그렇다면 그렇게 재량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른 입찰을 허용함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많으면 이런 입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게 다 걸러지고 내부적으로 통제가 가능한데 굳이 법률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여쭙보고 싶습니다. 통계를 한번 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입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서 이 법률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기속행위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것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 확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운법만 제출한 게 아니라 국가계약법도 같이 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국가계약법이나 공운법이나 그렇게 입찰자격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해 가는 여러 사례들이 많아서 국민들 피해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국가계약법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송이 제기됐고 거기서 대법원에서 판례,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확장 제재효가 발효가 된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조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별도의 조치 없이 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정안을 내게 된 거고요.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등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법률에 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해지거나 덜해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래서 법이 너무 엄격하게, 대법원 판례 하나를 가지고, 그 판례 때문에 모든 법을 이렇게 엄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현실적으로…… 모든 기관들이나 국가의 기관들이 내부적으로 다 판단할 능력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법을 이렇게 강하게 기속할 필요가 있나 이걸 여쭙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런 케이스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 그 법 내에서 각 기관들이, 아니면 각 국가의 단체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법이라는 게 모든 대상자들에게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양식 있고 또 바람직한 방향은 자기가 제재를 받았으면, A 공기업에 입찰참가를 했더니만 내가 제재당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B 공기업 또는 C 공기업, D 공기업에 안 가야 될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특별한 별도 조치 없이 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식 있고 또 올바른 경우라면 당연히 A·B·C·D가 있을 때 공기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안 해야 될 건지, 어떤 데는 좀 속된 표현으로 운이 좋고 안 걸려서 하고 어떤 데는 운이 나빠서 걸려서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별도 조치 없이 해야 되겠다는 그 원칙이 적용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별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고 하면 결국은 개별 사건별로 전부 다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는데 대법원의 경우도 어떤 내용인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올라갔을 때 개별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법의 미비라 할까 아니면 규정의 미비라 할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 다 적용이 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게 공운법인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전체에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일반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래서 이것은 확장효는 하고 시행령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보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항상 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법에 의해서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이든 해당 부처에서 그런 대원칙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량행위가 존재한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작년 말에 요소수 같은 사태가 터졌어요. 요소수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국가 재난적 상황도 아니에요. 공급망에 의해서 굉장히 부족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요소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요소수가 없으면 올 스톱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저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들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정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정도의 나라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한두 개 정도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받는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법을 이렇게 엄

하게 만드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류성걸 위원 지금 관점을 공공기관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재를 당한 부정당업자의 입장에서 볼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정당업자는 말하여 정당하지 않은 업자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이냐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업자를 선택하든지에 관련되는 사항은, 저는 그건 재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재를 당한 부정당업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이 불낙이 돼서 제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기대 위원 저도 한번……

○소위원장 유동수 예.

○양기대 위원 한번 차관님한테 여쭙보겠는데, 현행은 보니까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공기업이 판단되는 경우 등에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을 가지고 개정을 하려 하는 이것까지도 지금 그동안에 해 온 것이나 다름없지요? 어때요? 이 현행 조항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으로, 신설한 내용을 현행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해 왔는데 조금 더 강조를 뒤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해 왔는데 법안 제안을 주시기를 그걸 법에서 명확하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양기대 위원 그러니까 현행을 가지고 신설까지도 해 왔는데 이걸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측면이니까 그건 선택의 문제일 수 있겠네요.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류성걸 간사님 말씀도 맞고 그런데 그건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저는 오히려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 항상 갑이라 생각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을일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입찰자격을, 입찰을 하려고 하는 어떤 업체, 민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항상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이 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을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데, 공공기관이 꼭 필요한데 제제한 데를 다 없애고 나면 아무 데도, 업무 효율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지요. 효율적이지 않은데 그것까지 법으로 모두 다 막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냐. 지금 우리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전부 다 이게 걸러지고 있다면……

데이터가 다 공유되지요? 공공기관의 제재를 받는 경우 그 데이터가 모든 공공기관에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입찰을 할 때, 공고를 할 때 그런 기관들을 전부 다 걸러 내고 있잖아요, 현재적으로.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공기관이 입찰공고문을 띄울 때 몇 년 이내 제재받은 게 없을 것 이런 게 다 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는 거지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할 수 있다로, 재량행위로 전부 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걸러 왔다 그거예요. 그런데 법을 굳이 이렇게 엄하게 만들어서 얻고자 하는 실익이 별로 없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을인 경우에는 이 법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부정당업자는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보에 보면 부정당업자 해서 죽 나오는데 부정당업자를 관보에 게재하는 이유는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 포함해서 국가기관이나 ‘이런 나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업자들이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공고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개별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면 부정당업자는 각 개별 공기업마다, 공공기관마다 부정당업자를 지정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 이건 재량행위니까 할 수 있다……

○류성걸 위원 아니지요. 이것……

○소위원장 유동수 재량이지, 지금까지는.

○류성걸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부정당업자라는 제도를 각 개별 공공기관이 판단해서,

본 기관이 부정당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지요. 그러면 공고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관점이 부정당업자라고 하는 이 업자는 공공기관, 공기업 포함해서 국가기관에서든지 또는 공적 기관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면 개별 공공기관마다 부정당업자를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이런 업자는 부정당기관이다, 다른 공공기관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이 안건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51쪽, 경미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제재금 납부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경미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제재금 납부로써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침익적 처분을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외의 제재방안이 없어 경미한 위반행위 시 개인의 법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우려되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조달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무화를 한다면 예외적 완화 조치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제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이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제재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의 제재금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과 성격이 유사하고 과징금은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를 공공기관이 부과하도록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정안에 따른 제재금 수익 처리에 대한 규정을 현재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제재금은 공공기관이 행정청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갈음한다는 점, 해당 공공기관 수입으로 귀속 시 제재금 전환 유인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과징금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서 국가예산의 일반회계로 귀속됩니다.

다음, 과징금과 달리 부과,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행정법상 일반절차가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경미한 부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제재효를 확장하는 경우에 특히 경미한 경우는 제재금으로 납부를 갈음하는 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전문위원께서 주신 의견 중에 ‘제재금’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이 없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고 제재금을 부과한다라고 하고 그 부과하는 절차나 이런 것을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과징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행정기관들이 부과하는 것이다 보니까 표현은 ‘제재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절차적인 것은 기재부령이나 이렇게 해서 부과하는 절차들을 저희들이 규정하면 그 지적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이 부분은 국가계약법과 공운법의 차이를 해소한달까, 국가계약법에는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해결이 되는데 국가계약법과는 다르게 공운법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제재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제재금이라는 용어가 여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재금이라든지 아니면 과징금이라는 표현

을 써도 되는데 국가기관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썼고, 그다음에 당연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되는 각종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계 기본원칙상 없으면 잡수입이 되든지 회계처리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절차가 필요하면 시행령에 넣어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췄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에서 용어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저희들 의견은, 과징금은 국가기관이 부여하는 것이다 보니까 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제재금은 사례가 없다고는 하는데, 이게 시행령이기는 합니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재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재금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이 항목은 정리 후에,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18항, 제20항, 총 3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성길 위원 잠깐만요. 17항……

○박대출 위원 17항 또 몇 항, 몇 항?

○류성길 위원 17항이 단가계약 체결 시 복수 낙찰자 그겁니까?

○소위원장 유동수 예.

○박대출 위원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줘요. 17항하고 몇 항이요? 번호도 모르는 상태로 의결을 하나.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17·18·20입니다.

○류성길 위원 원안 의결인 겁니까? 정리를 조금씩……

○소위원장 유동수 아까 깔았던 것, 홍성국 의

원안.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16쪽의 다와 22쪽의 라가 지금 결정된, 내용이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복수 낙찰자 결정 근거 마련.

○류성길 위원 그게 17항이예요? 그건 18항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그게 17항과 18항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17항이 정부안이고 18항이 홍성국 의원안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예.

그리고 복수 낙찰자 결정 근거가 정부안, 홍성국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이고요. 지금 22쪽, 공정위로부터……

○류성길 위원 그러면 17·18·19항이예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17·18·20입니다.

윤영석 의원님 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22쪽, 과징금 감면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면 근거 마련, 이 부분은 정부안과 홍성국 의원님 안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류성길 위원 그게 몇 항이예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17·18입니다.

○류성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됐습니까?

○류성길 위원 예.

○소위원장 유동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류성길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경미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소위원장 유동수 몇 항입니까?

○류성길 위원 조금 전에 논의했던 경미한, 과징금하고 제재금하고 관련된 사항……

○소위원장 유동수 공운법은 뒤에도 하나 있어 가지고 아직 의결을 안 했습니다.

○류성길 위원 그러면 잠정 의결하시지요.

○소위원장 유동수 다녀와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 가지고.

3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유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기속과 재량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제제금에 대해서도 합당한……

○류성걸 위원 안을 가져왔네요.

○소위원장 유동수 예. 그래서 이것 포함해서 다음 목요일 날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루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전체적인 수정안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대안이 나오면 바로 의결하지요.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 아직 저쪽에서……

목요일 날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652)

2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885)

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273)

2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940)

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036)

(15시29분)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총 5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항부터 28항까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유해성분 자료제출·정보공개, 소매인 우선 지정 근거 신설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57쪽부터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유해성분 정보공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과 식약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 적용례, 시행일 등

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복지위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9쪽의 진행 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담배 유해성분 등에 대한 검사 및 유해성분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간 업무 소관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 정부 내부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조속히 협의한 후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1일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합의의 기본 내용은 복지위 대안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추진하고, 세부사항으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담배 유해성 관리 대상을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인용한다는 것이고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 의결되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5년부터 이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담배의 제조·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도 유해성분 검사 및 공개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0쪽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담배 유해성 관리 관련해서 정부 합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담배사업법 반영이 필요한 내용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고, 담배유해성 관리법 반영 내용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식약처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과 제조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검사 결과를 검토한 후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각 의원님들 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담배사업법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연희 건강증진과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연경 위생용품정책과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동안 유해성 관련해서 공개하는 것을 어느 법에 담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해서 조율했고요. 그 안에 따라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기본적인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합의하고 법률이 통과되어서 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담배사업법에서도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유해성분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은 조문을 하나 넣어 뒤서 담배사업법과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법률과의 링크라고 그럴까요, 관계성을 유지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의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담배라는 게 연초의 잎으로만 정의가 돼 있는데 뿌리·줄기·열매 포함한 연초라고 해서 전부 다 포함하도록 돼 있고, 다만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제가 발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담배의 성분과 또 담배 성분에 관련되는 자료제출 또 성분에 관련되는 공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담배 성분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포함된 것을 전부 다 제외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서, 담배사업법에서 관련은 아니라 하더라도 식약처라든지 또는 다른 기관과의 관계 차원에서 놔둬야 될 건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합의된 부분이, 그러니까 담배의 정의 부분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논의되겠습니다만 담배의 범위는 여기서 저희들이 논의해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성에 대해서 공개하고 자료제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법률, 규정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 법률로 일원화하고 대신에 담배사업법과 유해성에 관한 법률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명시하기 위해서 담배사업법에는 유해성분의 검사 및 공개에 대한 원칙 조항을 하나 넣어 두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조문은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관련된 사항은 이미 다 논의가 됐던 사항들이고 또 상당히 진행되다가 제정법이 검토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수석님, 이것을 저쪽에 제정법 됐던 것과 관계만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담배사업법 수정안을 한번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류성걸 위원 그게 돼 있습니까? 배포를 해 주세요.

지금 그때 논의했던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또 하자는 것은 시간만 지나가고 진척은 없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정리된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돼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보시고……

○류성걸 위원 배포하셔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의결해야 될 그런 단계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담배가 어떻느니 또는 관계가 어떻느니 이것을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지금 뒤에 담배의 정의 부분이라든지 또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 정리된 조문 가지고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기 뒤에, 지금까지 한번 쭉……

저 같은 경우도 지난 경제재정소위가 아니어서 처음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수정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시지요.

○박대출 위원 원천적인 것 제가 좀……

○소위원장 유동수 예,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니코틴은 유해성이 검증된 거지요? 니코틴은 무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박대출 위원 유해성이 검증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는 담배로 인정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임형철 예.

○박대출 위원 유해한 걸로 이제는 검증이 돼서 유해한 것은, 담배로 인정하는 거예요, 원료로.

그런데 아직 검증 안 된 것은 유해한지 안 한지 몰라. 그런데 담배 원료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논리는 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유해성이 전제조건이 되는 겁니까, 검증이 전제조건이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유동수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진행하시도록 하지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앞으로, 추후에 할 내용의 핵심 내용을 먼저 질의하셔 가지고…… 박대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설명 듣고 일괄해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박대출 위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박대출 위원 예.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다 하시겠습니까?

○류성길 위원 쭉 한 번에 하고……

○소위원장 유동수 끝까지 하시지요, 그러면.

담배사업법 관련한 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래서 가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에 대해서만 개정하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갈음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결 조문으로 담배의 제조·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유해성분 검사 및 공개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한 조문 정도 넣자는 것이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 담배의 범위 확대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이고요. 66쪽입니다.

현재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들은 연초의 잎이 아니라 연초 또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면, 담배의 범위를 연초 전체로 확대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셨습니다. 그런데 합성니코틴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련 현황을 살펴본 후 논의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담배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입법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봅니다.

연초의 줄기·뿌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유사 담배를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시켜 안전성 관리 및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담배 관련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에서도 과세 대상을 ‘연초의 잎 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미 21년 1월 1일 시행된 바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과 연계하여 담배 유해성 관리 대상 확대 차원에서도 담배 정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다만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은, 합성니코틴은 과세 대상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의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안정성 관리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니코틴이 1% 이상 함유된 혼합물을 유독물질·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하여 환경부에서 관리 중이나 1% 미만인 경우에는 규제가 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69쪽입니다.

또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면, 합성니코틴은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경우 외국에서는 담배로 인정받

지 않아 품질 검증이 되지 않은 물질도 담배로 유통이 가능하여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국가별로 담배 정의가 다양한데 현재 WHO와 미국에서만 합성니코틴 유래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행법 30조에서 범죄 관련 몰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류성걸 의원님 안처럼 담배 정의가 확대된다면 이에 맞추어서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참고자료에는 담뱃세 관련 조문이나 유사 담배 관리 현황 등을 실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신설 조문으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국가유공자법,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현행 담배소매인 우선지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담배소매인 우선지정제도는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쟁자의 입장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소매인 우선지정제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이 담배소매인 신청 시 우선지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복권법에서도 복권사업자가 장애인·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 등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볼 때 지정을 받아야…… 조문에서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 마련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신설하는 것이고요. 소매인 명의

대여자를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추가적으로 형벌, 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안과 그런 형벌까지는 규정하지 않는 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소위에서 심사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소매인 명의 대여자를 제재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를 다른 법률의 자격증 대여 시 제재 수준과 동일하게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매인 지정취소 및 벌칙부과로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소매인 지정취소 제재와 함께 추가적으로 벌칙을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벌칙을 추가로 부과하는 개정안은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벌린 자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벌칙을 추가하지 않는 개정안의 경우는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소매인 지정취소라는 행정제재만을 우선 규정하는 것인데, 지금 오른쪽의 표에서 보시는 바같이 공인중개사·국가기술자격·건설기술자격·의료인 등 일정 자격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명의 대여 시 행정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는데 담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주류 판매의 경우에는 명의 대여 시 행정제재만 하고 형벌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류 판매와 유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6쪽은 시행일인데 정부의 시행 준비 필요 기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하나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연초 전체로 하는 것은 필요하더라는 의견이고요.

다만 합성니코틴까지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독성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게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담배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치 않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 신설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정할 수 있다’보다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다른 법체계나 의지를 보이는 측면에서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요.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형벌까지 가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나 이런 부분으로 제재 효과는 달성할 수 있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담배의 범위와 관련해서 저희 정부가 말씀드린 정도 범위까지만 확대가 된다 그러면 공포 후에 바로 시행하는 데도 현재로서는 큰……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니까 정부안은 뭐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것은 정부안이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시행일이 다 공포 후 3개월, 6개월, 2년까지 있는데 시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대출 위원 지금 담배의 정의, 담배의 범위 이러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담배의 원료, 담배의 재료, 담배의 성분,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임형철 국고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의 원료, 성분에 대한 차이를 지금……

○박대출 위원 아니야, 원료라는 말과 재료라는 말과 성분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나고요? 그 개념,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나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출자관리과장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대출 위원 예.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감사합니다.

담배의 원료라 하면 담배를 만들 때 들어가는 성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담배는 일반 연초를 말려서 하는데 그 자체만 태우면 역겹고 그래서 못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가미하기도 하고 또 연기를 더 풍성하게 만든달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낸 담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건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얼마나 유해하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서요, 그래서 담배를 만들 때 들어가는 주된 원료는 연초고……

○박대출 위원 니코틴은 첨가물입니까, 잎에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까?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하나의 성분으로 봤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연초하고 니코틴하고는 다른 게 아니지요? 연초 안에 들어 있는 게 니코틴이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예, 연초의 여러 가지 성분 중의 하나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니코틴이라는 원료 안에 연초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아닙니다.

○박대출 위원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연초의 여러 가지 성분 중에 니코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물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죄송합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연초 잎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안의 여러 가지 성분 중에 니코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잎 안에 니코틴이 성분으로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원료하고 성분하고는 그 안에 포함된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재료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잖아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개념이라면 이미 연초의 잎을 원료로, 성분으로 한다는 건 그 성분으로 포함된 니코틴은 이미, 담배의 정의에서 연초의 잎이라는 걸 포함할 때 연초가 성분이고 이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니코틴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 전자담배나 이런 것은, 합성니코틴이라는 것은 니코틴을 별도로 합성을 해서 만들어 갖고 그런 성분을 재료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여기는 잎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액상으로 주로 만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원료는 액상이지요. 그 안에 든 니코틴이 재료 중에 들어 있는 성분이고,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담배의 주된 성분인 니코틴을 흡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니코틴을 연초를 통해서 흡입하느냐 화학물질을 결합한 합성물질을 통해서 만들어 내느냐……

○박대출 위원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정의를 내릴 때 지금 연초가 아니라 비타민이라는 걸 넣었을 때 궐을 원료로 한다, 궐 안에 들어 있는 비타민 C는 성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반 담배에서는 그게 규정이 되는데 전자담배라는 규정을 이 범위에 넣으려니까 이쪽에 와서는 합성비타민이 지금 원료가 되는 개념이 되어 버려요. 이게 주체가 달라요. 이 개념을 지금 어떻게 조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성분이고 하나는 재료인데, 들어 있는 하나의 성분에 불과한데 성분만 따로 뽑아 갖고 범위에 다시 새로 규정을 하자, 넣는 게 지금 이상해요. 이렇게 개념을 넣으려면 연초 안에 들어 있는 성분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돼. 지금 범위를 규정하는 데 그런 함정이 있어요. 전혀 다른 각도의 문제, 성분과 원료를 지금 섞어 버렸어, 이 개념에.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 김장훈 다시 한번 말

씀을 드리면……

○박대출 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비타민 C는 이렇게 이름을 표현해요. 이 비타 500에는 원재료명 해 갖고 이 안에 성분과 재료를 다 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박카스에 보면 여기는 성분과 첨가제를 따로 구분을 해 갖고 넣었다고.

기존의 담배의 개념은 안에 들어 있는 재료의 개념으로 해 갖고 성분이라는 개념은 안 들어 있어. 그런데 새로운 담배 개념을 넣을 때 성분이라는 것을 별도의 하나의 재료의 개념으로 넣어 버린 거야. 완전히 다른 걸 가지고 지금, 궐하고 비타민 C를 같이 섞어 버렸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차관님, 국장님, 담배가 뭐예요?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담배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지금 현재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서 빨거나 또는 씹거나 냄새 맡는 것으로 해서 제조된 것이 담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류성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골에서 담배라는 풀을 심어요. 저도 직접 심어 봤고 키워 봤고 또 이것을 뜯어서 황초도 만들고 납품도 하고 했던 것을 옆에서 다 봤습니다만.

이제까지는 담배 이파리만 가지고 담배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배는 풀이니까, 1년생 풀이에요. 그런데 키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지요. 조그만하게 심어 갖고 커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데 이파리만 따서 그것을 가지고 담배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배라는 제품 속에는 니코틴을 포함해서 각종 물질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니코틴이고, 그런데 니코틴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이 들어가면 기분도 좋고 또는 신경안정제 역할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꼭 담배 이파리만 아니라 뿌리에서, 줄기에서 또는 열매에서 그 담배라는 연초에서 나오는 추출물을 가지고 피워도 담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파리에서 뽑아내는 것만 가지고 만드는 제품을 담배라고 하는데 내가 제안했던 것은 뿌리, 줄기, 열매, 이파리, 그러니까

담배라는 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만든 제품을 담배라고 한다, 제가 이렇게 담배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풀 이외에 다른 데서 뽑는 어떠한 것도 담배가 아닙니다. 담배 풀이라는 뿌리부터 줄기까지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해야 담배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그다음에 담배첨가물은 담배를 만들 때 거기에 향료도 넣고 또 각종 그걸 넣어 갖고 맛을 좋게, 향기를 좋게 또는 빨아들이면 박하가 들어가면 박하향도 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담배라는 것은 어쨌든 정의에 의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담배 연초라는 풀 이외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담배가 아니다, 담배 풀에서만 만든 거다.

그러면 합성니코틴은 담배예요, 아니예요?

두 가지입니다. 니코틴은 두 가지예요. 지금 현재 액상담배와 담배라는 풀에서 뽑아낸 것은 담배예요. 담배 이외의 다른 것에서 만들어 낸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닙니다. 맞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류성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담배사업법을 하면서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액상담배다 또는 무슨 담배다, 어떤 것도 담배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지만 담배라는, 연초라는 풀에서 뿌리, 줄기, 이파리, 열매에서 뽑아내지 않은 어떠한 것도 담배가 아니라는 그 말씀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류성걸 위원 그게 먼저 정의에 관련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액상니코틴 포함해서 이것은 담배에서 뽑아낸, 그러니까 연초에서 뽑아낸 어떠한 것도 담배입니다, 그게 빨아 먹든지 씹어 먹든지 또는 흡입을 하든지 어떤 형태도. 그렇기 때문에 액상니코틴이라 하더라도 그 니코틴의 원료가 담배에서 뽑아낸 것은 담배고 합성으로 외부에서 화학적으로 제조한 것은 담배가 아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요.

이야기가 죽 됩니다마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매인 지정 근거 관련되어서, 장애인복지법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나오는 ‘노력한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법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아까 차관님도 ‘노력한다라고 규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예요.

우리 법에서는 딱 정해야 돼요. 다른 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 갖고 하지만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 소매인 지정 관련되어서는 이리이리이리한 것,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던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렇고, 거기다가 기초수급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다 넣든지 아니면, 다 넣으면 사실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건 나중에 기재부에서 뽑아 주십시오. 기초수급자만 해도 한 600만 명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당초에 됐던……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만 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류성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장애인만 일단 하는 걸로 해서 노력이 아니고 지정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근거 마련은, 당연히 대여를 한 사람과 또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수석님 검토의견에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벌칙을 양측에 다 할 건가, 그것은 저는 양측에 다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매인 지정 취소는 우리 소위에서 논의하는 대로 하겠는데, 다만 형벌까지 하는 부분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면허정지를 얼마 한다든지 또는 지정 취소를 해서, 취소 이후 얼마 이후에 다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을 거니까 취소한 이후에 몇 년간은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게 내 법안 전반적인 설명이고 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저는 하나……

WHO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합성니코틴 유래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WHO하고 미국.

○소위원장 유동수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미국은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게 규율되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영어로는 푸드, 드

러그, 앤드 코스메틱 액트(Food, Drug, and Cosmetic A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식약 같은 거네요? 일종의 식약 관련,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거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면, 그냥 보통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는데 그걸 피우면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할 때 ‘담배 피운다’고 얘기를 하지 ‘연기 피운다’ 이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걸 담배로 인식하고 피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담배에 대한 정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고, 특히 WHO나 미국에서 이걸 하고 있다면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유해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여기까지 담배로 규율하는 게 제 생각에는 미래를 위한 입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들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해성에 대해서 합성니코틴을 분석할 전문가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왜 정부 측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율하지 않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까 WHO하고 미국 예를 드셨는데 WHO하고 미국 이외에는 지금 합성니코틴에 대해서 담배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뭔가 유해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된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유해성 평가를 해 보는 데 있어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력 부족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단편적인 논문들이나 평가들이 나오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없다 보니까, 아까 류성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담배라 하면 하여튼 연초를 태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재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 거기에 앞이든 줄기든 뿌리든 그것은 다 담배지만 뭔가 새로운, 니코틴이라는 성분만 딱 빼 가지고 담배라고 하기에는 지금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입니

다.

○소위원장 유동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담배를 평생 피워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요. 이게 들어가 있는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과 어떤 현실적 운영 관계에서 차이점이 됩니까? 담배로 규율되는 것, 굳이 규율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담배로 규율되지 않으면 담뱃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도 있고 혹시나 모를 국민의 건강권도 지킬 수 있고, 그걸 집어넣는 게 별로 손해날 게 없는데 기재부에서 이렇게 합성니코틴을 배제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사실 연초의 뿌리 부분에 대한 것도 과정을 보면 결국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게 담배가 아닌데 담배와 뭔가 유사한 제품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느냐 하는 이슈가 먼저 나왔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법에서 먼저, 담배사업법상에 담배 플러스 이렇게 먼저 조문을 넣어서 담뱃세를 부과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것까지는 담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위를 넓혀 주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를 넓혀 주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담배라는, 담배가 가지는 그 유해성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도 더 많이 부과를 하는 건데, 그게 어찌 되었든 간에 담배 줄기, 뿌리 이런 부분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같이 유해하다는 게.

그런데 이 니코틴을 그냥 합성해서 하는 부분이 과연 유해하나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섰는데 모양이 비슷하다든지 여러 성분 중에 니코틴이 들어간 것은 같다든지 이런 이유만으로 담뱃세와 똑같이 세금을 부여하고 담배에 정의해 놓고 하기에는 현재 과학적인 근거나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상황이다라는 게 저희 정부의 판단입니다.

○박대출 위원 이게 조금 논의가, 논점이 몇 개가 섞여 버리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저 말씀……

○소위원장 유동수 예, 말씀하세요.

○박대출 위원 먼저 물어보고 갈게요.

지금 현재 만드는 담배 중에서 줄기나 뿌리를

찾고 담배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 말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박대출 위원 만들고는 있네. 오케이, 됐고.

지금 과세적인 측면과 국민 건강적인 측면을 같이 섞어 가지고 접근하면 이 문제 못 풀 것 같아요. 과세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과세의 측면에서 하고, 국민 건강 측면은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그렇게 풀어야 이 문제를 같이 풀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이.

지금 모든 정의의 전제를 뭘 가지고 얘기들을 하고 있냐 하면, 담배는 다 유해하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해하기 때문에 그걸 추려서 징벌적 의미에서 과세도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인데 지금 이 합성니코틴이라는 것은 유해하다는…… 유해성은 인정되어 있는 게 니코틴이지요. 안 유해한 니코틴은 없잖아요. 합성을 해서 하면 니코틴이 유해한 것이지 그 유해성이 어느 정도냐, 독성이 얼마나 되는 거냐 이런 걸 지금 우리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무알코올 음료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담배의 형태로 만들어지되 무니코틴 담배든 그런 담배의 형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무타르 형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해로워야 담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해롭지 않은 담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의를 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해롭지 않은 담배는 담배가 아닌 이상한 결론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재부가 지금 독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담배로 인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담배의 다양한 모델이 어떤 형태로 진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유해하다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홍성국 위원님.

○홍성국 위원 지금 담배 유해성분에 대해서도 연초로 나오는 것도 아마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니코틴만 얘기하지 그 안에 수백 가지가, 기존의 연초에도 이런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아마 이것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 것 같은데 정확히 딱 3년 전에 똑같은 법안을 심사했다가 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번에 가습

기살균제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5년 전에 줄(JUUL)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연기 많이 나는 거여 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몸에 해롭다고 나오면서 난리가 났던 적이 한 5, 6년 전에 한 번 있었는데요.

이 유해성분을 인간의 과학적인 능력으로 지금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재위에서 한다는 얘기는 유해성분보다는 세법적인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합성니코틴이라는 그 안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성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또 그게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는 한 10년쯤 피워 봐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위나 이런 데랑 같이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어떤 내용이 나온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상황에서 그것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화합물은 100%가 없는 거거든요. 뭔가 불순물이 있고 그렇다 보면 화학작용이 나타나 가지고서 또 굉장히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우리 가습기살균제로 천몇백 명이 돌아가신 그런 사건까지 있었는데 줄이라는 담배로 인해서 난리가 났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봤으면서 함부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조금, 너무 인간으로서 오만한 것이다.

그래서 복지위나 이런 데서 우리가 크게 한 번 더 공론화를 해서 논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재위에서는 세법 중심으로 가야지 이 성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아마 이해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모르고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아까 차관님 설명이 조금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이 부분은 담배 유해성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개인의 기호나 소비에 방점을 둔 세금이지 그게 몸에 해롭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측면은, 물론 가치 있겠지만 거기만 너무 강조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런 측면이 강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이것 오늘 논의가 쉽지 않겠는데……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동수 예, 말씀하십시오.

○류성걸 위원 아까 정리되어 있는 자료 있다는 데 자료 배포를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김주영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동수 자료는 배포하시고.

김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차관님, 외국의 사례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일법상에 포괄 규정으로 해서 담배 원료 제품뿐만 아니라 담배에서 추출되지 않더라도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으면 담배 제품으로 포괄하는 규정이 있는 미국 같은 데가 있고 동일법상에 별도 규정하는 나라들이 또 있어요. 캐나다나 프랑스, 뉴질랜드 이런 데는, 담배는 연초 유래 제품이고 전자담배는 별도 규정하되 니코틴 포함 유무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국가들이 캐나다나 프랑스나 뉴질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담배는 연초 유래 제품이고 전자담배는 별도 규정하되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에 한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흡연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세금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제일 크다고 봅니다.

○김주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외국 사례들을 보더라도.

○소위원장 유동수 김주영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경제재정소위에 들어와서 그동안의 스토리를 몰라서 그런데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공청회나 기재부 차원에서 토론회나 이런 걸 열어 본 적 있습니까? 특히 이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할지 말지 이런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기재부 차원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담배사업법은 기재부 법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제가 보기로 이걸 어떻게 규율하더라도 이게 기호식품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걸 즐기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으로 그것을 규율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굉장히, 그런 절차를 반드시 저희들이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밟지 않고 이해당사자가, 국민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해당사자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규율하는 게 저는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재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하는 범위의 문제인데요. 현재 담배사업법은 잎을 전부, 일부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담배고 그 외 부분은 담배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담배 전체로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넓혀 주시는 것까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합성니코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재부 차원만의 것일지 아니면 복지부나 이런 데 같이할지 그것은 한번 의견을 더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대출 위원 그런 절충은 괜찮을 걸로 보여주세요.

○류성걸 위원 이것부터 먼저 하시고, 제가……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지금 담배사업법은 담배에 관련된 사항이고 액상담배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담배 중에서 담배의 뿌리나 또는 줄기나 열매를 가지고 만드는 소위 말하는 액상 담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가 아닙니다, 앞으로 만든 것만 담배니까.

그래서 일단은 담배사업법에 따라서 연초로 만든 모든 것은, 그게 어떤 형태든지 연초에서 뽑아낸 것은 전부 담배로 담배사업법에 규정이 되고, 다만 세법에서는 지금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또는

열매에서 뽑아낸 니코틴, 액상 담배도 지금 현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와 또 통칭 니코틴을 합성으로 만들어서 순수하게 담배에서 추출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외부에서 합성된 것뿐만 아니라, 니코틴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로 흡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법에서 과세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신 차원에서 담배사업법에 관련되는 담배를 먼저 규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사항은 세법을 통해서든지 다른 규정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 낸 첨가물을 담배로 정의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하게 되면 이 법들이 폐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재부에서 정리를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류성걸 의원안에 대한 수정안이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 것은 폐기되니까?

○소위원장 유동수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것 폐기를 안 하려고,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첨가물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 대안 폐기하는 게 저는 좀……

말씀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지금 첨가물 관련해서 류성걸 의원님 안, 김수홍 의원님 안, 양정숙 의원님 안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법안을 남기고자 하는 분이 계신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안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제가 봐서는 일단 대안으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이 부분은 목요일 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한 가지만 더……

○소위원장 유동수 예.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지금 배부해 드린 류성걸 의원님 안 중심으로 개정안 만든 걸로 저희가 대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뒤에 보시면 부칙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일은 정부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

(16시24분)

○소위원장 유동수 의사일정 제29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소위 자료 87쪽입니다.

29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88쪽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검사 거부 등에 대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형벌 규정 완화 차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비범죄화 방안의 일환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법 제정 당시부터 원가 및 경영상황

보고 또는 관계자료 제출명령 위반과 소속 공무원의 장부·서류 등의 검사 거부 등을 구분하여 규정해 왔음을 고려할 때 양자의 과태료 금액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 밑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태료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현재 형벌인데 지금 개정안은 이를 똑같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는 것인데 형벌이었던 것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과태료 금액을 좀 차별화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96쪽, 97쪽에 보시면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준을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난주에 논의했던 법안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경제형벌규정 개선TF에서 발굴하고 추진하는 법안이고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000만 원이 사실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한 건데 법 내에서 또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수정의견과 같이하는 데 대해서도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

(16시27분)

○소위원장 유동수 의사일정 제30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소위 자료 98쪽입니다.

개정안은 불공정조달행위 및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 조사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공 요청과 비축물자 재판매 금지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두 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

9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공정조달행위와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 조사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공 요청입니다.

개정안은 불공정조달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수출입 거래 및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그리고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나 수출입 거래자료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입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관세법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과세정보 요청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제공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취지를 보면 최근 불공정조달행위와 비축물자 재판매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현장조사와 업체 제출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의 증빙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이를 좀 더 쉽게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 조사대상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 폐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로 불공정조달행위 적발률을 보면 2018년에 71.6%였는데 22년에는 55.4%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축물자 재판매행위 관련해서, 22년에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2017부터 21년까지 4년간 비축물자 재판매가 확인된 업체의 재판매 차익이 2억 442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달청은 감사원 감사 전까지 해당 기간 동안 재판매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개정안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와 수출입 관련 자료는 과세정보고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입니다. 다른 행정적인 노력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 체계에서도 불공정조달행위나 비축물자 재판매행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행정제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을 때 행정제재 강화 등 자료제출 실효성 강화방안과 조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의 표에 조달청 권한을 정리를 해 봤고요.

또 비축물자 재판매행위는 현행법에 조사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이용실적이 있는 업체 등으로 요청 대상을 특정하는 등 무분별한 자료 요구 방지 방안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이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대통령령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일 규정 수정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나 번도 같이 할까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105쪽은 비축물자 재판매 금지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두고 그 예외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파산·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 승인을 얻어 비축물자의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고요.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에서 비축물자의 재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에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유도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에 조달청 고시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사업자 등록·이용약관이 있는데요 이를 개정해서 비축물자의 재판매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유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두 개정 사안 중에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공 요청 건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다른 수단을 해 보다가 마지막으로 이 수단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자료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조달청에서 이 조문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쫓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서 참석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마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축물자 재판매 금지의 예외사유 규정 부분은, 지금 하위규정에서 조금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개정하는 과정에서 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조달청에서 부연설명 가능하면 좀 해 주십시오.

○조달청공정조달국장 문경례 조달청 공정조달국장 문경례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저희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는 신고를 기반으로, 신고가 되면 조사를 합니다. 신고 내용……

○소위원장 유동수 좀 가까이 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마이크를 쓰시든지.

○조달청공정조달국장 문경례 신고 내용들을 검토해서 조사 개시할 건지 불개시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개시하면 업체에 통보를 하고 가서 현장에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저희 같으면 직접생산을 한다든지 원산지 위반 제품이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다른 수단들이 없어서…… 타깃으로 조사를 하는 업체들만 그리고 또 그 물품에 대해서만 현재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금계산서에는 매출자 또 매입자 그다음에 거래내역만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걸 사측에서 받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또 불공정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잘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위원장 유동수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국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유동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서영교 위원 제가 잠깐……

○소위원장 유동수 말씀해 보시지요.

○서영교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축물자 이런 게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조달청공공물자국장직무대리 박진원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직무대리 박진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의 비축물자는, 현재 비철금속 6종과 일부 긴급수급조절물자를 저희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비축물자에 대해서 연간 상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체들이 가져가서 재가공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위원장님,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칙의 시행일도 고쳐야 되고요. 조문도 정비가 필요해서 그 내용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안을 만들어 오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달청공공물자국장직무대리 박진원 시행 시기는 6개월로……

○소위원장 유동수 시행 시기는 6개월 후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6개월로 해 주시면, 시행령을 좀 개정해야 돼서요.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항에서 34항까지, 4건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오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158)

3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020)

3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721)

3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826)

(16시38분)

○소위원장 유동수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총 4건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윤영석 의원님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계사무 목적 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사무 목적 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마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58조 제1항 1호를 삭제하는 개정으로,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최근 개정됐기 때문에 통계법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통계법에 승인통계·예비통계 작성 및 통계등록부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각호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언상 불확정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은 통계사무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하여 통계자료 수집 및 통계 작성을 원활히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은 예비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거절된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 문제가 발생

한다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취지는 통계사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 통계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예비통계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9쪽에는 경미한 수정인데요. 안 제34조의2제1항제3호의 통계등록부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통계등록부는 지난번 통계법 개정 시에 개정 반영된 것으로 통계 시행일이 2024년 1월 19일입니다. 따라서 통계등록부 조문은 2024년 1월 19일 이후 시행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 제34조의2는 제목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열람요구권 등의 적용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례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의 적용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조문 제목을 특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11쪽에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예비적 통계를 작성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2호를 삭제하는 것과 통계등록부를 명확히 하는 부분 그리고 부칙의 시행일을 손보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111페이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항은 잠정 의결하고……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계속……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이 계속 있으니까 이 항은 잠정 의결하고 나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나 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1항의 통지의무 면제사유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설되는 조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통지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으로,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통계작성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통계 작성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작성업무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법 20조에 따른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은 이 경우에도 통지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통지의 제한 또는 거절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지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우려는 통지 이후 처리정지 요구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3호를 처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자구를 정교하게 함으로써 범위를 좀 더 축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고지’ 용어는 ‘통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고지’ 용어 역시 ‘통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에 맞추어서 116쪽에 수정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잠깐만요.

그다음, 다 항까지 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117쪽, 다 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제한 및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신설되는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35조, 36조 및 37조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를 따르면 통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거나 통계 작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할 경우 데이터 훼손으로 인해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통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훼손은 정보주체의 열람이 아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열람과 정

정·삭제·처리정지는 분리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의 근거가 필요한 이유는 비식별 처리된 정보에 관해서 정보주체가 내용을 특정하고 열람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이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20쪽에 수정의견으로 열람과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거절을 분리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두 가지 다 전문위원실하고 정부하고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한 거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통계가 업무에 필요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통계를 하는데 그 통계를 하는 데 있어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주소가 불명하다든지 할 수 있는데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거나 중대하게 손상된 경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왜 통계를 내야 되지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유동수 예.

○통계청차장 최연옥 통계청 차장 최연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총조사 같은 걸 하면 몇천만 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일이 그 개인한테……

○김영선 위원 무슨 조사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인구총조사요.

그런 것을 하면 기본적으로 조사 응답자가 천만 건 또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게 되면 천만 건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정보를 저희가 처리를 하거나 수집을 했을 때 정보주체가 때문에 그 개인한테 통지를 해 줘야 되는데……

○김영선 위원 해 줘야지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그것을 저희가 천만 명이 넘는 것을 처리하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

이 들 수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통계 작성하는 데는 돈 안 들어요? 그러면 통계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면.

○통계청차장 최연옥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통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개인 국민들한테 뭔가 편의를 주기 위한 환경을 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면 인구통계 조사할 때 다가가호호 조사하거나 동사무소에 가서 조사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개인정보가, 인구총통계든 뭐든지 해 줬으면……

예를 들면 그 통지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지요? 문자로 한다든지, 실제로는 인구총통계할 때 가가호호 방문해 갖고 동의를 받지 않아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지금까지는 안 받았습시다. 왜냐하면 통계 목적으로 수집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예외로 뒀었기 때문에 안 받았습시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계법의 적용 예외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을 통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경우만 예외로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정보 하면서 과도한…… 제 생각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될 때는 상당한 비용이나 뭐가 드는데 그 비용을 능가하는 통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통계를 수집하는 게 통지가 부수돼 갖고 가는 게 당연한 세팅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힘들다 그리고 위험성이 적다 그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 일반 규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고.

뒤에 다 번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정정·삭제가 필요할 경우는, 데이터가 훼손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데이터 훼손 안 되게끔 장치를 만드는 것까지가 행정부의 의무지 데이터 훼손을 이유로 해서 내 정보가 정정이 돼야 된다는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건 저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내 개인정보가 이상하게 입력됐는데 나는 그러면 그걸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위원님, 이 건은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는요 데이터가 있는데 ‘내 정보를 삭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통계를 내는데 그 개인이 빠져 버리면 통계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을 때 예외를 두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좀 유형화를 하든지 아주 특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수많은 통계에 아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굉장히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너무나 추상적으로, 그냥 데이터만 모으는 정도라서 집체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걸 특징을 해야 되지 이걸 일반화한다는 거는 통계에 있어서의 개인의…… 정보 보호를 하는 이유 자체가 몰각되는 것 같아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외람되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 자체가 개인정보가 식별이 되거나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외를 갖고 와 보세요. 어떤 예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갖고 와 보세요.

○**소위원장 유동수** 양기대 위원님.

○**양기대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물론 통계청 입장에서는 통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규정들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봐도 우리 국민들이나 통계에 응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방금 차장께서 국가통계를 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요즘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방금 차장께서도 외국 사례도 얘기했지만 국내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더 정리하고 또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또 관련자들의 얘기를 좀 더 듣고 논의를 해야지 이렇게 가면 나중에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보류하거나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홍성국 위원님.

○**홍성국 위원** 빅데이터 발전하기 위해서 통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놓고 보게 되면, 사례로 아까 인구주택총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통계작성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 이런 통계 사례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나 항에 보면 이렇게 써 놔놔요.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통계청차장 최연옥**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받아 와서 소득 통계 또는 자산통계, 주택소유통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정보를 이용을 한 거거든요, 연계를 해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조항이 없으면 그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겠다고 통지를 개인한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사전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행정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 자체가 광범위하게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통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좀 제외해 달라, 그러니까 배제해 달라는 취지로 지금 조항을 만드는 거거든요.

○**홍성국 위원** 마저 질문드리면,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된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빅데이터산업도 발전을 못 하고 있고, 특히 건강보험 통계 같은 거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하나도 이용들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한 통계를 이용하고 이게 산업화될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김영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양기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다 이해가 되지만 통계청에서 개인정보를 까 갖고 무슨 사고가 난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 저는 이 법안대로 처리하는 게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오.

○류성걸 위원 차관님 그리고 차장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이 될 때, 이게 올해 3월 14일 날 공포가 됐네요. 그렇지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예.

○류성걸 위원 그런데 그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 58조제1항제1호가 삭제가 될 때 왜 그런 내용들을 통계청 또 기획재정부에서 반박을 한다든지 지키지를 못했나요? 이야기를 했습니까?

○통계청차장 최연옥 그 전에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이미 합의가 다 돼 있었던 상황인데……

○류성걸 위원 그러면 합의가 돼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합의를 하신 거예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원래는 동시에 개정을 하기로……

○류성걸 위원 동시에라는 것은 뭐를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그러니까 그쪽도 개정이 되면 우리도 같이 상정을 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추기로 했는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정무위에서 상정이 될 때 원래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조항이 포함이 돼서 통과가 돼 버렸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그때 당시에 이 조항이 삭제가 안 됐으면 통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지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의를 또는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가능한 거는 근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요. 그렇지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예.

○류성걸 위원 15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15조의 규정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통계법에다가 넣자 이런 말씀이지요?

차장님, 답변하세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이예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류성걸 위원 그러면 정책이나 그다음에 통계에 관련되는 최고사령탑은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할 때, 물론 통계청에서 대응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완전히 사후약방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다 돼 있었던 것 다 삭제하고 나서 뒤에 와 갖고 뒷북 친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통계청 차장님,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로…… 그게 언제예요? 3월이에요, 2월이에요? 제가 보니까 공포일이 3월 14일이니까 훨씬 이전에 2022년이나 또는 2023년 초에…… 이게 언제 논의가 확정됐지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제가 차장이 되기 전이라……

○류성걸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22년 12월 5일 날 정무위에서 대안이 의결된 것으로……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22년이면 작년 이맘때 조금 이후인데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좀 크게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AS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예, 맞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냥, 물론 열심히 대응하셨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옳게 대응을 못 했던 거를 우리한테 지금 와 갖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 58조제1항제1호를 삭제를 하고 난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좀 미흡하니까 통계법에다가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맞는 거지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도 그때 당시에 바로 법안을 내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됐는데, 그때 합의했던 사항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언제 발의한 거예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7월에 발의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참 뒤에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홍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통계라는 게 혹시라도 개인정보를 오용하고 또는 남용하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통계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전체적인 인구주택조사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서비스 또는 산업 관련 통계를 하기 위해 갖고,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 된다면…… 통계라는 게 뭐겠습니까? 대수의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하면 통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관련되는 사항을 제가 짚어 보니까 이거는 통계청 또 더 범위를 넓힌다면 기획재정부가 대처를 잘못했던 거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홍성국 위원님한테 좀 물어봐도 될까요?

○**소위원장 유동수** 예.

○**김영선 위원**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던 58조 1항도 삭제한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삭제하고 여기 통계법에 와서는 다시 살린다고 하면 기존의 결정하고 지금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뒤늦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개인정보법에서 삭제한 거하고 통계청 입장하고 완전히 충돌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빅데이터하고 AI 사회가 오면 인간한테 뭐가 남겠어요? 사적 공간이나 개인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아니면 완전히 통계 전체주의화에, 개인들이 자기 권리를 개입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는 있던 것도 없애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와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대량 총계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게 범람할까 봐 문제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특정한 것만 법에서 이런이런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홍성국 위원** 새로운 통계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그때마다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상중하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개인정보성이 굉장히 낮으면서 포괄적인 것 그런 거는 이 사항에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포괄적

이나 아니냐를 당사자도 정정도 못 해, 빠지도 못 해, 국회도 안 들여다봐, 그러면 그거는 현 정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건데.

그리고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현 정부가 이거 중요하고 안 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누가 그거를 소송을 해도 안 되는 거고 이의를 해도 안 되는 거고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위원님, 개인정보……

○**소위원장 유동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이렇게 하시지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김영선 위원님과 양기대 위원님께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 개인정보법에서 이 항목을 없앤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정무위에서 논의될 때 이 법이, 개인정보법 논의될 때 소위 자료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 소위 자료들도 공유하게 해 주시고 또 김영선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김영선 위원** 갖고 오게 하면 많다니까요.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설명을 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3일 목요일 10시에 회의를 열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영선 김주영 류성걸 박대출
서영교 양기대 유동수 이수진
홍성국

○청가 위원(1인)

송언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김 병 환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언 성
국 고 국 장	임 형 철
재 정 관 리 국 장	김 현 곤
공 공 정 책 국 장	강 영 규
정 책 기 획 관	장 문 선
국 유 재 산 심 의 관	윤 석 호
재 정 건 전 성 심 의 관	최 한 경
공 공 혁 신 심 의 관	장 정 진

조달청

공 정 조 달 국 장	문 경 례
공 공 물 자 국 장	박 진 원
직 무 대 리	

통계청

차 장	최 연 옥
통 계 정 책 국 장	안 형 익